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2018. 7. 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예규 제5호
전부개정 2021. 3. 3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예규 제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토론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라 하고, 대회명 앞에 개최 연도의 숫자를 기재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공동 주관사와 후원사 또는 후원단체(이하 “후원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은 대회 개시일 전 60일까지 개최일정 및 장소, 참가 자격, 대회 방식, 그 밖의 대회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대회 요강 공표)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은 대회 개시일 전 60일까지 개최일정 및 장소, 참가 자격 및 신청방법, 그 밖의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대회 요강을 정하여 중앙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장 운영 조직

제6조(총괄)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 하되,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중 대회 장소에 별도의 운영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토론위원회에 토론 논제 선정 10일 전부터 결승전 개최일 후 1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토론 논제 결정

2. 대회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토론 및 토론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의 토론문화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토론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회 운영

제9조(참가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역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
2. 전년도 대회에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
3. 그 밖에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

제10조(참가 신청) ①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토론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② 중앙토론위원회는 참가 신청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활용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대회 규모에 비해 참가 신청이 많은 경우 선착순, 서류심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토론 논제) 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성, 적정성, 명료성, 공정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논제는 대회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제12조(대회 방식) ① 대회 방식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되,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대회는 참가자 수에 따라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선은 조를 나눠 각 조의 모든 참가자가 서로 한 번 이상 경기를 치르는 리그전 방식으로, 본선은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진 편은 제외시키면서 이긴 편끼리 겨루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준결승부터는 예·본선과 다른 별도의 일정과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방송사 등을 통해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제13조(경기 방식) 참가자는 개인별 또는 2명 이상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경기에 2개 팀이 참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논제에 대해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구분하여 서로 의견을 주장하며 토론한다.

제14조(경기 규칙) ① 하나의 경기에서 각 팀의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② 각 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여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고, 토론 중에 제시·이용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참가자는 대회 규정을 숙지하고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람자 등 제3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소통하는 행위
2. 큰 소리로 성원 또는 야유를 하는 행위
3. 무례한 동작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행위
4. 심사위원에게 출신 학교, 인적 사항 및 이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5.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이 금지하는 행위

제15조(심사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토론 및 토론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 1명을 지정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 과정을 총괄한다.

③ 하나의 경기에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심사장 1명을 지정하여 해당 경기 심사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각 경기를 심사하여 승리팀을 결정한다.

1. 논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2.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일관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3. 상대팀 주장과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여부
4. 전달력·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토론 예절을 준수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7조(심사방법 및 이의신청) ① 모든 심사위원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심사한다.

1.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한다.
2. 심사위원의 개인적 사상·신념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3. 참가자의 종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선호도, 나이, 사회적 지위, 장애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 해당 경기 전까지의 누적 심사 점수나 전적을 해당 경기 심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참가자가 제14조제3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경기 심사에서 감점하거나 실격패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대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다음 경기 시작 전까지 심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위원장은 해당 경기의 심사 결과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경기의 심사 결과를 다시 정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참가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경기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대회관람) ① 누구든지 대회를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소음을 유발하는 등 대회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관람자를 대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9조(시상)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에서 입상자로 선정된 팀에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